

**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**

**1.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
(안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)**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, 심사 등 업무 일부를 ‘중소기업중앙회’ 또는 ‘중소기업제품·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(이하 유통센터)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개정

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신청, 심사, 인증 비용 징수,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,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를 유통센터에 위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성능인증 업무를 유통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추진

2.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 추가 (제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구매계획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신설된 국가기관의 장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

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질병관리청, 재외동포청, 우주항공청의 장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추진

3. 조합 추천 수의계약 대상 조문 정비 (제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 계약법 시행령에서 '22.9월에 삭제된 조문인 제25조제3항을 준용 중

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8조제2항제2호의 인용 조문에서 삭제된 조항 제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함